|  |  |  |
| --- | --- | --- |
| **《선물거래 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  국무원 령 제627호  《<선물거래 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이 2012년 9월 12일의 국무원 제216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2012년 10월 24일  국무원은 《선물거래 관리조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즉,  "어떤 단위나 개인을 막론하고 선물거래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선물거래라 함은 공개적인 집중 거래방식이나 국무원 선물거래감독관리기구가 인가한 기타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선물계약서 또는 선물권 계약서를 거래의 표적물로 하는 거래활동을 지칭한다.  이 조례에서 선물계약서라 함은 선물거래소가 통일적으로 제정한, 미래의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일정 수량의 표적물을 인도하기로 규정한 표준화한 계약서를 지칭한다. 선물계약서에는 상품 선물계약서와 금융 선물계약서 및 기타 선물계약서가 포함된다.  이 조례에서 선물권 계약서라 함은 선물거래소가 통일적으로 제정한, 매입측이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특정가격으로 약정한 표적물(선물계약서 포함)을 매입 또는 매출하는 권리를 규정한 표준화한 계약서를 지칭한다."  2.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즉,  "선물거래는 이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선물거래소, 국무원이 인가하였거나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인가한 기타 거래장소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전 항에서 규정한 선물거래장소 이외에서의 선물거래를 금지한다."  3. 제6조 제2항을 "국무원 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인가 없이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선물거래장소를 설립하거나 그 어떤 형식으로 선물거래 및 관련 활동을 조직하지 못한다."로 수정한다.  4. 제8조 제3항을 삭제한다.  5. 제10조 제1항 (4)호를 "(4) 선물거래에 집중적 계약이행 담보를 제공"으로 수정한다.  6. 제19조 제1항 (2)호를 삭제하고 (4)호를 (3)호 변경하여 "(3) 등록자본금 변경 및 주주권 구조 조정"으로 수정한다. (5)호를 (4)호 변경하여 "(4) 5% 이상 주권을 소지한 주주가 새로 증가하였거나 또는 지주 주주의 변경"  7. 제20조 제1항 (4)호를 "(4) 경내 분지기구의 경영범위 변경"으로 수정한다.  8. 제23조를 "선물 투자자문에 종사하는 기타 선물영위기구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인가한 업무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구체적 관리방법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다."로 수정한다.  9. 제24조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외기구는 건물거래소에서 특정 품목의 선물거래에 종사할 수 있다.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다."를 추가하여 제2항으로 한다.  10. 제32조를 삭제한다.  11. 제33조를 삭제한다.  12. 제36조를 삭제한다.  13. 제69조 제1항을 제66조 제1항으로 변경하여 "선물거래소가 하기 각호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동시에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업무정지 정돈을 명한다.  (1) 인가 없이 제멋대로 이 조례 제13조에 열거한 사항을 처리한 경우  (2) 보증금이 부족한 회원의 선물거래를 허용한 경우  (3)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선물거래에 참여하였거나, 규정을 위반하고 그 직책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우  (4)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금을 수취하였거나 보증금을 유용한 경우  (5) 선물의 거래, 결제, 인도 자료를 위조, 개찬하였거나 규정대로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당일 무부채결제제도, 등락폐장제도, 선물 계약보유량 한정제도, 계약 대량보유자 보고제도를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감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8)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비 선물회사결제회원이 이 조 제1항 (2)호, (4)~(8)호 행위 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이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 처분한다."를 추가하여 제3항으로 한다.  14. 제78조를 제75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즉, "선물거래장소를 불법 설립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선물거래활동을 조직한 경우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취체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소득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만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는 경고를 주고 동시에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선물회사 또는 기타 선물영위기구를 불법 설립하거나 제멋대로 선물업무에 종사한 경우 취체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소득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에서 직접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는 경고를 주고 동시에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5. 제84조를 제81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즉, "이 조례에서 규정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처벌은 이 조례에 이미 규정된 이외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결정한다. 여타 관련부서의 법정직권과 관련되는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여타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여타 관련부서의 법정직권에 속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여타 관련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하다."  16. 제85조를 제82조로 변경하고 제1항 (1)호, (2), (3), (4), (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즉, "(1) 상품 선물계약서라 함은 농산물, 공산품, 에너지 및 기타 상품과 관련 지수제품을 표적물로 하는 선물계약서를 지칭한다." "(2) 금융 선물계약서라 함은 유가증권, 이자율, 환시세 등 금융제품 및 관련 지수제품을 표적물로 하는 선물계약서를 지칭한다." "(3) 보증금이라 함은 선물거래자가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자금이나 제출한, 가치가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강한 표준 창고증권, 국채 등 유가증권으로서 결제와 보증이행에 사용한다." "(4) 결제라 함은 선물거래소가 공포한 결제가격에 따라 거래 쌍방의 거래결과에 대해 진행하는 자금청산과 이체를 지칭한다." "(9) 표준 창고증권이라 함은 인도하는 창고가 발급하고 선물거래소가 인정한 표준화한 화물 인출증빙을 지칭한다."  17. 제89조를 삭제한다.  이외에 조항의 순서와 개별적 문자를 상응하게 조정, 수정한다.  이 결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물거래 관리조례》는 이 결정에 따라 상응하게 수정한 후 다시 공포한다. |  | **国务院关于修改《期货交易管理条例》的决定**  国务院令第627号  《国务院关于修改〈期货交易管理条例〉的决定》已经2012年9月12日国务院第216次常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2年12月1日起施行。  总理 温家宝  2012年10月24日    国务院决定对《期货交易管理条例》作如下修改：  　 一、第二条修改为：“任何单位和个人从事期货交易及其相关活动，应当遵守本条例。  　 “本条例所称期货交易，是指采用公开的集中交易方式或者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批准的其他方式进行的以期货合约或者期权合约为交易标的的交易活动。  　 “本条例所称期货合约，是指期货交易场所统一制定的、规定在将来某一特定的时间和地点交割一定数量标的物的标准化合约。期货合约包括商品期货合约和金融期货合约及其他期货合约。  　 “本条例所称期权合约，是指期货交易场所统一制定的、规定买方有权在将来某一时间以特定价格买入或者卖出约定标的物（包括期货合约）的标准化合约。”  　 二、第四条修改为：“期货交易应当在依照本条例第六条第一款规定设立的期货交易所、国务院批准的或者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批准的其他期货交易场所进行。  　 “禁止在前款规定的期货交易场所之外进行期货交易。”  　 三、第六条第二款修改为：“未经国务院批准或者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批准，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设立期货交易场所或者以任何形式组织期货交易及其相关活动。”  　 四、删去第八条第三款。  　 五、第十条第一款第四项修改为：“（四）为期货交易提供集中履约担保”。  　 六、删去第十九条第一款第二项。第四项改为第三项，修改为：“（三）变更注册资本且调整股权结构”。第五项改为第四项，修改为：“（四）新增持有5%以上股权的股东或者控股股东发生变化”。  　 七、第二十条第一款第四项修改为：“（四）变更境内分支机构的经营范围”。  　 八、第二十三条修改为：“从事期货投资咨询业务的其他期货经营机构应当取得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批准的业务资格，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制定。”  　 九、第二十四条增加一款作为第二款：“符合规定条件的境外机构，可以在期货交易所从事特定品种的期货交易。具体办法由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制定。”  　 十、删去第三十二条。  　 十一、删去第三十三条。  　 十二、删去第三十六条。  　 十三、第六十九条第一款改为第六十六条第一款，修改为：“期货交易所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满10万元的，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  　“（一）未经批准，擅自办理本条例第十三条所列事项的；  　“（二）允许会员在保证金不足的情况下进行期货交易的；  　 “（三）直接或者间接参与期货交易，或者违反规定从事与其职责无关的业务的；  　 “（四）违反规定收取保证金，或者挪用保证金的；  　 “（五）伪造、涂改或者不按照规定保存期货交易、结算、交割资料的；  　 “（六）未建立或者未执行当日无负债结算、涨跌停板、持仓限额和大户持仓报告制度的；  　 “（七）拒绝或者妨碍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监督检查的；  　 “（八）违反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行为。”  　 增加一款作为第三款：“非期货公司结算会员有本条第一款第二项、第四项至第八项所列行为之一的，依照本条第一款、第二款的规定处罚、处分。”  　 十四、第七十八条改为第七十五条，修改为：“非法设立期货交易场所或者以其他形式组织期货交易活动的，由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予以取缔，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满20万元的，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对单位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非法设立期货公司及其他期货经营机构，或者擅自从事期货业务的，予以取缔，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满20万元的，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对单位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十五、第八十四条改为第八十一条，修改为：“对本条例规定的违法行为的行政处罚，除本条例已有规定的外，由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决定；涉及其他有关部门法定职权的，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应当会同其他有关部门处理；属于其他有关部门法定职权的，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应当移交其他有关部门处理。”  　 十六、第八十五条改为第八十二条，第一款第一项修改为：“（一）商品期货合约，是指以农产品、工业品、能源和其他商品及其相关指数产品为标的物的期货合约”。第二项修改为：“（二）金融期货合约，是指以有价证券、利率、汇率等金融产品及其相关指数产品为标的物的期货合约”。第三项修改为：“（三）保证金，是指期货交易者按照规定交纳的资金或者提交的价值稳定、流动性强的标准仓单、国债等有价证券，用于结算和保证履约”。第四项修改为：“（四）结算，是指根据期货交易所公布的结算价格对交易双方的交易结果进行的资金清算和划转”。第九项修改为：“（九）标准仓单，是指交割仓库开具并经期货交易所认定的标准化提货凭证”。  　 十七、删去第八十九条。  　 此外，对条文的顺序和个别文字作相应的调整和修改。  　 本决定自2012年12月1日起施行。  　 《期货交易管理条例》根据本决定作相应的修改，重新公布。 |